#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57 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김현정 • 민병덕 • 한정애

박상혁 · 정성호 · 민형배

이광희 · 모경종 · 정준호

박정현 • 이상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.

#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한국은행법」의 개정)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제2절의 제목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101조의 제목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전단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2조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중 "추정대차대조표"를 "추정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3조(「협동조합 기본법」의 개정)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58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제103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절 <u>대차대조표</u> 와 연차보고서	제2절 <u>재무상태표</u> 와 연차보고서
드	드
제101조( <u>대차대조표</u> 의 공고) ①	제101조( <u>재무상태표</u> 의 공고) ① -
한국은행은 매월 20일 이내에	
전월의 최종영업일 현재의 자	
산 및 부채를 일정한 항목으로	
표시하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하	<u>재무상태표</u>
여야 한다. 이 경우 매 회계연	
도 최종영업일 현재의 <u>대차대</u>	
<u>조표</u> 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	
후 2개월 이내에 공고할 수 있	,
다.	
② 제1항에 따른 <u>대차대조표</u> 에	② <u>재무상태표</u>
는 한국은행의 총재・감사 및	
그 작성 담당 책임자가 기명하	
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	

#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예산의 편성) ① 공기업ㆍ	제40조(예산의 편성) ①
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	
· 추정손익계산서 · <u>추정대차대</u>	<u>추정재무상태</u>
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	<u> </u>
편성한다.	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
#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결산보고서의 승인) ① 협	제52조(결산보고서의 승인) ①
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	
지 결산보고서(사업보고서, <u>대</u>	<u>제</u>
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잉여금	무상태표
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	
을 말한다)를 감사에게 제출하	
여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53조(출자감소의 의결) ① 협동	제53조(출자감소의 의결) ①
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	
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	
일 이내에 <u>대차대조표</u> 를 작성	<u>재무상태표</u>
하여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58조(청산인) ① (생 략)	제58조(청산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	②
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	
사하고 재산목록과 <u>대차대조표</u>	<u>재무상태표</u>
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	
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	
아야 한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03조(청산인) ① (생 략)	제103조(청산인) ① (현행과 같

	음)
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	2
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	
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<u>대차</u>	
<u>대조표</u> 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	<u>재무상태</u>
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	<u> </u>
인을 받아야 한다.	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생 략)